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24

발의연월일: 2021. 5. 6.

발 의 자:김회재・김수흥・최혜영

안규백 · 강병원 · 조승래

최종윤 · 김병주 · 오영훈

양정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·저장·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용기·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·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·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생명·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 ·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·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 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"제3호"를 "제4호"로 한다.

4. 생명·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· 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·포장으로 만든 식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	제9조(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
금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	금지 등) ①
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	
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	
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	
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	
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	
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	
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	
목적의 제조・가공・수입・조	
리・저장・운반 및 진열을 금	
지할 수 있다.	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생명·신체에 위해를 초래할
	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
	용기 · 포장과 유사하거나 동
	<u>일한 용기·포장으로 만든</u>
	<u>식품</u>
<u>4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3호</u> 까	<u>5</u>
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	
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	
五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